

| | |
|-----------|-------------------------|
| 의안번호 | 제180호 |
| 의결 연월일 | 2019년 4월 17일 (제372회)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
|-------|--------------|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17일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180 |
|----------|-----|

제안연월일 : 2019. 4. 17.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해 항공운항증명서, MRO산업, 관광 및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수의 소관 위원회에 걸쳐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공항발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함.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9명 이내로 한다.
- 활동내용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관광·항공·광역교통망 확충
 - 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 지원

2. 제안이유

- 최근 청주국제공항은 거점항공사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및 국제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도민들의 공항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에 대한 기대 충족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청주국제공항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공항 정책에 대한 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바, 공항 관련 사안과 정책들에 대한 조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공항발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 3. 6, 2009. 7. 10, 2014. 6. 27>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7. 2, 2004. 11. 12>